

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5-1258호

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15년 11월 27일
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
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의 제척 조항 신설(안 제3조제3항)
- 나.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정비(안 제5조)
- 다.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(안 제11조)
- 라.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비(안 제12조)
- 마. 재정공시(정기공시) 횟수(연 1회→2회)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정비(안 제13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(참조 기획예산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(전화 : 02-901-6135, FAX: 02-901-6150, E-mail: canto7a@gangbu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

라. 보내실 곳: (우편번호 01071)

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(수유동)

마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강북구 홈페이지 입법예고란(<http://www.gangbuk.go.kr>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